

2019년도 제2회 건설사업관리사자격검정 시행공고

2019년도 제2회 건설사업관리사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한국CM협회장

1. 필기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가. 필기시험과목

구분 과목	건설사업관리사(일반)	건설사업관리사(특수)
1차	• 건설사업관리 개론 • 건설계약 및 클레임관리 • 건설사업의사결정 및 위험관리 • 건설정보 및 문서관리	• 건설사업관리 개론 ※ 1차 및 2차 8개과목 중 7개과목은 면제하고 상기 1개과목만 실시
2차	• 경제성공학 및 사업비관리 • 공정계획 및 관리 • 품질관리 및 경영 • 건설안전 및 환경관리	

나. 검정기준 및 방법

기준·방법 자격검정	검 정 기 준	검 정 방 법
필 기 시 험	1차과목	전반적인 사업관리수행능력의 유무
	2차과목	고도의 전문지식에 의한 전문분야의 사업관리수행능력의 유무
면접시험	표현능력·인성·전문성 등의 유무	객관식[4지선다형] 객관식[4지선다형](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구술형(2차 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각 과목별 출제범위 및 문항 수 등은 건설사업관리사(CMP) 출제기준 참고

2. 수검자격 및 시험의 일부면제

가. 자격의 구분 및 수검자격

구 분	수 검 자 격
건설사업관리사(일반)	1. 최근 5년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전문교육 및 건설사업관리 전문가 교육과정을 합산하여 14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가.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 후 6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후 8년 이상 그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나.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관련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그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라. 건축사 또는 건설산업분야 기술사
건설사업관리사(특수)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가.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그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호사 또는 공인 노무사 등 국가자격이나 국가공인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비고

- 1) 구분란의 "건설사업관리사(일반)"는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사(특수)"의 업무이외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건설사업관리사(특수)"는 건설공사에 관한 세무·회계·감정평가·소송업무(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및 일반 법률사무를 포함한다)·노무관리·금융 또는 건설계약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2) 수검자격란의 "관련분야"또는 "그 분야"란 구분란의 ()내의 분야에 대한 업무(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말한다.

나. 시험의 일부면제

구 분	면 제 대 상 자	시험 또는 면제과목
건설 사업 관리 사 (일반)	▪ 2015년 12월 7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사(일반) 자격을 취득한 자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한국기술사회가 시행한 CMP 자격을 취득한 자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설기술교육원이 시행한 PCM자격을 취득한 자	< 면제과목 > ▪ 1차 필기시험 전과목
건설 사업 관리 사 (특수)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감정평가사 · 변리사 · 법무사 · 행정사 또는 공인노무사 ▪ 경상학부 또는 법정학부이상을 졸업한 자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 석사학위의 자격을 소지하고 9년 이상, 학사학위의 자격을 소지하고 12년 이상의 금융 또는 건설계약관리업무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시험과목 > ▪ 건설사업관리개론

3. 시험시행일정

구 분	시험장소 및 시간 공고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필기 시험	1차	2019. 10. 1(화)	2019. 11. 3(일)
	2차	2019. 11. 8(금)	2019. 11. 24(일)
면접시험	2019. 11. 29(금)	2019. 12. 5(목)	2019. 12. 11(수)

- ※
- 시험장소 및 시간 우리협회 홈페이지(www.cmak.or.kr)에 공고함.
 - 합격자는 우리협회 홈페이지(www.cmak.or.kr)에 공고 및 개별 통보함.

4. 수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교부 및 접수기간 :

- 1차 필기시험 : 2019. 9. 16(월) ~ 9. 27(금) (10일간)

- 2차 필기시험 : 2019. 11. 11(월) ~ 11. 15(금) (5일간)

※ 매일 09:00 ~ 17:00까지임(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① 수검원서는 아래의 별지 또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www.cmak.or.kr) 자격
검정란에서 다운받아 작성 제출할 수 있음.

② 수검자격 확인에 필요한 자격증사본·학력증명서 및 관련분야 실무경력증
명서원본은 최종합격자 발표(2019.12.11.) 후 7일 이내에 제출함.

나. 문의 및 접수처

- 주 소 : (0667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 유니온빌딩 4층
한국건설관리협회(한국CM협회) 정책사업본부

※ 지하철7호선 내방역④번 출구에서 직진100m

- 전 화 : 02-585-4713 • 팩스번호 : (02)585-2689

다. 접수방법

- E-Mail 접수(cosmoscrab@cmak.or.kr) - 서명과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야함.
- 접수처 접수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협회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우편 접수 - 등기로 우송하되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는 것까
지만 유효함.

라. 응시수수료 및 납부방법

- 응시수수료 :

- 건설사업관리사(일반) 1차 160,000원, 2차 140,000원

- 건설사업관리사(특수) 160,000원

다만, 면접시험 응시수수료는 면접시험 공고일(2019.11.29)에 별도 공지함

- 납부방법 : 은행에 온라인 입금

- 계 좌 명 : KEB하나은행 064-22-00743-0

- 예 금 주 : 사단법인 한국건설관리협회

5. 합격자 결정기준

가. 필기시험은 1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당 40점 이상,
각 차수별 필기시험 과목을 합산하여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 함
필기시험의 1차 과목 중 일부나 2차 과목에만 응시하는 자도 같음.

나. 면접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자로 함.

6. 주의사항

가. 수검자는 수검당일 수검표와 주민등록증(기타 신분증명서)을 지참하되, 수검표를 분실한 자는 수검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수검표를 재교부 받아야함.

나. 수검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검정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다.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수검을 중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수검 시행일부터 5년간 수검자격을 정지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라. 수검자격 등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마. 본 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임.(자격등록번호 2008-0397)

[별 지] ()

건설사업관리사 자격검정원서						사 진 (3.0cm×3.5cm)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①성 명	(영문 :)		생년월일 (국 적)	()			
②주 소	(주택) 우편번호(-)			(휴대전화 :)			
	(직장) 우편번호(-)			(자택전화 :) (직장전화 :) (E-mail :)			
③최종학력	년 월 일		학교	과	년(졸업·수료)	학 위	(고졸·전졸·학사·석사·박사)
④자격사항	(자격증명 / 취득일 / 자격번호 / 발급기관)		실무경력 (경력관리기관 확인, 시험전일까지 참여일수만 인정)	년 개월 일 (총 : 일) (경력관리 : 협회)		소 속	(부서/직위)
⑤검정구분	⑥필기시험 1차		⑦필기시험 2차		⑧실기시험		⑨면접시험
위와 같이 자격검정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검자 : (서명 또는 인) 한국건설관리협회장 귀하							
수 검 번 호				수 수 료			

()

수검번호	건설사업관리사 자격검정원서 접수증						
성 명	(영문 :)		생년월일				
검정구분	필기시험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		면접시험
년 월 일 한국건설관리협회장							

기 재 요 령

1. 응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생년월일과 국적을 기재한다.
2. ④란에는 학위가 있는 경우 학위명(수여학교 명기)과 건설사업관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보유자격 모두의 자격명(자격번호 포함)을 기재한다.
3. ⑥ ⑦ ⑧ ⑨에는 해당란에 ○표를 한다.
4. 수검번호란은 수검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5. 수검표의 검정구분란도 위의 제3항과 같이 기재한다.
6. 원서 사진 상단의 ()에는 "일반" 또는 "특수"를 기재한다.

주 의 사 항

1. 수검자는 수검당일 수검표와 주민등록증(기타 신분증명서)을 지참하되, 수검표를 분실한 자는 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수검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2. 수검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검정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실기시험시에는 지정된 도구 외에는 일체사용 할 수 없다.
4.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수검을 중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수검시행일부터 5년간 수검자격을 정지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5. 수검자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된다.